



中小企業 創業의 길

관(창업관련 인·허가사항 처리기관)과 협의를 하게되며, 이때 협의가 안될 경우 상공부에 설치된 창업지원 심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창업관련 정보 제공은 △시, 군, 구에 마련된 창업민원실(2백 44개소) △중소기업 상담회사(22개社) △중소기업지원유관기관(64개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본, 지부(6개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11개소) △상공회의소(48개소) 등에서 받을수 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비롯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시중은행등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설립후 1년 이내이거나 신규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우선육성업종, 지정계열화학품목, 취약기술업종, 신규제품, 수입대체 또는 수출유망품목, 외화가득률이 높은 품목, 신기술·첨단기술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진공이 올해 지원할 창업자금은 1백 10억원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시설자금이 3억원 이내(소요자금의 90%이내) △운전자금 1억원이내(소요자금 50%이내) 이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이 8년

(3년거치), 운전자금이 3년(1년거치)으로 금리는 연 9%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지원절차는 창업신청자가 창업조성실시 계획승인을 신청, 중진공은 실태를 조사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 창업투자 회사를 통한 자금지원은 신설중소기업 및 설립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이다.

지원절차는 창업자가 창업투자회사의 상담을 거쳐 사업계획검시로 투자여부 결정에 대한 예비심사를 받는다.

본 심사에서는 창업자 경영능력, 기술성, 수익성등을 검시하여 투자여부,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러 창업투자회사는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이 해결된다. 자금 지원방법은 주식인수, 전환사채 인수, 약정투자등이 있으며, 지원의 특징은 창업자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지배가 금지되며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방식의 자금지원이다.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창업을 할때 투자회사가 창업개시일로 부터 10%이상 2년간 출자한 창업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되어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지원한도는 투자후 창업기법주식 또는 자본금의 50%이내이며 상공부장관이 승인할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업하고자 할때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군·구에 설치된 창업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사업개요(생산품목등) △생산 및 판매계획(내수·수출)과 고용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생산방식 및 공정표 △공장건설 추진일정표 △생산시설명세 △전력, 용수등 유틸리티(지원시설)사용 계획 △공해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다.

다만 이러한 모든 사항을 창업자가 공통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의 절차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창업신청자로부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기